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8. 5. 6.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4월 1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8년 4월 20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5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98. 4. 2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조남성)

가. 제안이유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위배됨으로 동 조례 제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기타 수입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 수입을 삭제(안 제2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준석)

동 조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4
----------	-----

제출년월일 : 1998. 4. 2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위배됨으로 동조례 제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영세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수입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 수입을 삭제(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

나. 협의사항 : 없음.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조례(안) : 별첨

첨 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된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p> <p>2.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p> <p>3. <u>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 수입</u></p>	<p>제2조(기금의 조성)</p> <p>.....</p> <p>1.(현행과 같음)</p> <p>2.(현행과 같음) (삭 제)</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5. 6.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4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8년 4월 21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5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98. 4. 2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김종박)

- 가. 제안이유
 -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지원방안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면허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업구조조정 지원에 필요한 지방세감면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